P-133-2013

화학공장의 인터록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

2013. 9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O 작성자: 김태옥
- Ο 제정 경과
 - 2013년 9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O 관련 규격 및 자료
 - KOSHA GUIDE P-108-2012, "안전운전절차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"
 - 손재근, "Heater interlock by-pass로 인한 위험분석 및 사고방지에 대한 연구", 2003
 - Roy E. Sandes, "Chemical Process Safety", Gulf Professional Publishing, 2011
 - CCPS, "Guidelines for Safe Process Operation and Maintenance", 2010
- O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: 2013년 10월 2일

제 정 자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P - 133 - 2013

화학공장의 인터록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화학공장의 안전한 가동 및 중지를 위하여 설치된 인터록의 운영에 관한 절차 및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화학공장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장치 중에서 인터록의 신설, 수정, 삭제, 설정값 변경 및 우회(Bypass)의 설정 및 해지에 대하여 적용한다.

3.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인터록 (Interlock)"이라 함은 기기장치, 설비 및 공정의 안전성 확보와 공정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설치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 제어장치를 말한다.
 - (나) "설정값 (Set value)"이라 함은 운전변수가 변화하다가 운전값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인터록이 작동되어 장치 또는 공정을 안전한 방향으로 유도되도록 계기 또는 프로그램에 설치된 값을 말한다.
 - (다) "알람값 (Alarm value)"이라 함은 운전변수가 변화하다가 그 값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설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경보형식 등으로 인지가 가능하도록 계기 또는 프로그램에 설치된 값을 말한다.
 - (라) "우회 (Bypass)"라 함은 인터록 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.
 - (마) "해지 (Release)"라 함은 우회시켰던 인터록 장치를 설계의 개념에 준하여 인터록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치하는 행위를 말한다.

P - 133 - 2013

- (바) "점퍼 (Jumper) 작업"이라 함은 인터록 우회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인터록의 변환에 필요한 제반작업을 말한다.
- (사) "로직 (Logic)"이라 함은 공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일련의 흐름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정조건과 실행순서에 따라 기호로 나타낸 것 을 말한다.
- (아) "시퀀스 (Sequence)"라 함은 로직을 기초로 하여 그 흐름도를 전기적인 기호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.
- (자) "ESD (Emergence shut down) 계기"라 함은 인터록에 의해 공정 및 개별 장치를 비상으로 중지시키는 계기를 총칭하여 말한다.
- 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주요 물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「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한다.

4. 인터록의 신설, 수정, 삭제 및 설정값 변경

4.1 대상 및 사유

- (1) 공정의 안전성 확보와 기기 및 설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실시한다.
- (2) 기본설계회사, 상세설계회사, 장치 및 설비 제작사의 권장 및 운영 공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.
- (3) 안전성 확보를 위한 외부기관의 진단 및 검정에 따른 보완 요청 시 이의 검토결과 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.

4.2 인터록의 신설, 수정 및 삭제 절차

- (1) 단위공장의 운전책임자는 인터록의 신설, 수정 및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 변경관리절차에 따라 변경관리요청서를 작성하여 변경관리위원회에 상정한다.
- (2) 변경관리 요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한다.
 - (가) 인터록의 신설, 수정 및 삭제 사유

P - 133 - 2013

- (나) 인터록의 변경이 표시된 공정배관계장도면(P&ID) 및 인터록 로직 도면 (Interlock logic diagram) 등
- (3) 변경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한다.
 - (가) 인터록의 신설, 수정 및 삭제 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
 - (나) 인터록 변경이 실시되는 설비 및 장치의 설계치
 - (다)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추가적인 보완장치의 필요성 등
- (4) 변경관리위원회는 인터록의 변경 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기록하고,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추가적인 보완사항을 반영한 변경관리계획을 승인 한다.
- (5) 인터록의 변경작업은 가능한 정기보수 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하고, 공장운 전 중에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(가)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유사한 인터록 확보
 - (나) 인터록 우회작업을 통한 안전성 확보
- (6) 인터록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작동시험을 통하여 정상적인 작동 유무를 확인 하여야 한다.

4.3 인터록의 설정값 변경절차

- (1) 단위공장 운전책임자는 인터록 설정값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관리요청서를 작성하여 변경관리위원회에 상정한다.
- (2) 변경관리 요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한다.
 - (가) 인터록 설정값 변경 사유
 - (나) 인터록 설정값이 표기된 인터록 로직 도면 및 ESD 계기 데이터 등
- (3) 변경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한다.
 - (가) 인터록 설정값 변경 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
 - (나) 인터록 설정값 변경이 실시되는 설비 및 장치의 설계치

P - 133 - 2013

- (다)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추가적인 보완장치의 필요성
- (라) 인터록 설정값과 알람값의 간격(설정값은 반드시 알람값에 의하여 알람이 작동된 다음 값으로 결정하여야 한다)
- (4) 변경관리위원회는 인터록 설정값의 변경 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기록하고, 위험 성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추가적인 보완사항을 반영한 변경관리계획을 승인한다.
- (5) 인터록 설정값을 변경하는 경우 프로그램적인 설정치는 프로그램에서 변경하고, 현장 스위치의 교체가 필요한 것은 현장 스위치를 교체한다.
- (6) 현장 스위치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작업 시 설정값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.
- (7) 인터록 설정값 변경 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인터록 항목(Item)을 우회시킨 다음에 실시한다.

4.4 기록 관리

- (1) 인터록 로직 및 설정값 변경과 관련 변경관리위원회의 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- (2) 인터록 로직 및 설정한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기술자료의 변경이 필요한 것은 그 결과를 확인하여 최신본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 - (가) 공정배관계장도면(P&ID) 및 인터록 로직 도면
 - (나) 인터록 시퀀스 도면
 - (다) 운전절차서
 - (라) 인터록 및 ESD 계기 데이터 등

5. 인터록의 우회 및 해지

5.1 대상 및 사유

(1) 인터록 관련 계기의 불량으로 공정의 안전운전은 불가능 하지만, 별도의 계기에 의해 공정의 감시가 가능하고, 안전성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.

P - 133 - 2013

- (2) 예측이 가능한 계기의 오작동(주변에서 방사선 검사 시 화염감지기의 오작동 등)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 적용한다.
- (3) 공정의 정상운전 중에 인터록 관련 계기의 일시적인 수리를 위한 경우로써 공정의 정상적인 운전과 기기 및 설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적용한다.
- (4) 운전 중에 실시되는 예비 장치 및 설비의 교체와 이에 따른 예비 장치 및 설비를 수리할 경우에 적용한다.
- (5) 상기 원인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인터록 우회를 즉시 해지하여 정상화하여야 한다.

5.2 인터록의 우회 및 해지 절차

5.2.1 인터록 우회 승인의 책임 및 권한

인터록 우회 승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<표 1>과 같다.

<표 1> 인터록 우회 승인에 대한 책임과 권한

인터록 변경내용	승인자
우회를 하더라도 공정 및 안전에 위험요인이 없거나, 동일한	단위공장 교대조
목적의 다른 로직이 존재하는 경우	책임자
비상정지 등 비정상 조업의 경우 우회를 해야만 설비의 테	단위공장
스트(Test) 또는 설비의 가동이 가능한 경우	운전책임자
화재, 폭발 등 공정안전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터록 우	사업장 안전관리
회	총괄자

5.2.2 정상운전 시 우회절차

- (1) 공장의 정상운전 시 계기의 오작동 및 작업 등으로 인터록의 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록 우회가 안전에 영향이 없는지를 확인하고, 승인자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작업부서에 작업허가서 형태로 요청한다.
- (2) 작업부서는 작업허가서가 접수된 다음 책임자의 작업승인을 얻은 후에 다음과 같

P - 133 - 2013

이 작업을 수행한다.

- (가) 작업 요청부서는 작업의 안전한 진행을 위하여 입회자를 배치시킨다.
- (나) 작업자는 입회자로부터 작업시작 허가를 얻은 후 작업을 수행하되, 한 가지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결과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입회자에게 확인하고, 입회자의 다음 작업지시에 따라 다음 작업을 수행한다.
- (다)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자는 작업승인자(또는 입회자)에게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고, 작업승인자(또는 입회자)는 이를 확인한 후 작업허가서에 완료 서명 을 한다.
- (라) 인터록 우회 공정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우회 기기에 대한 설정값의 변경은 불가하며, 현장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운전값이 설정값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.

5.2.3 긴급사항 발생 시 우회절차

- (1) 인터록 우회 스위치가 있는 경우에 긴급상황의 발생으로, 공정의 연속적인 안전운 전이 불가능하고,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우회작업을 요청하거나, 절차에 따 를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 단위공장 운전책임자는 즉시 인터록을 우회하여 공정의 안전화를 유도하여야 한다. 다만, 야간근무 시에 운전책임자의 결정이 어려 운 경우에는 단위공장 교대조 책임자가 수행할 수 있다.
- (2) 인터록 스위치가 없는 경우에 점퍼작업에 의한 인터록 우회를 작업부서에 즉시 요청하여 조치하도록 하고, 그 결과를 승인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.

5.2.4 인터록 우회 해지절차

- (1) 인터록 우회 해지를 위하여 단위공장 운전책임자는 우회된 모든 인터록의 원인 소멸과 공정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고, 조속히 우회를 해지하여야 한다.
- (2) 오작동에 의한 이상 발생 시 오작동 발생요인이 완전 제거되면 즉시 해지한다.
- (3) 인터록 우회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.
 - (가) 작업부서에 작업허가서 형태로 우회를 요청한다.
 - (나) 작업 요청부서는 작업의 안전한 진행을 위하여 입회자를 배치시킨다.

P - 133 - 2013

- (다) 작업자는 우회할 항목에 대해 설정값이 정확한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, 이상 이 없을 경우에 후회를 해지한다.
- (라) 작업자는 입회자로부터 작업개시 허가를 얻은 후 작업을 수행하되, 한 가지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결과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입회자에게 확인하고, 다음 지시에 따라 다음 작업을 수행한다.
- (마)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자는 작업승인자(또는 입회자)에게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고, 작업승인자(또는 입회자)는 이를 확인한 후 작업허가서에 서명을 한 다.
- (4) 인터록 우회가 신호전송 캐비넷에서 점퍼작업 형태로 진행된 경우 1주에 1회 이상 신호전송 캐비넷의 점퍼가 인터록 관리대장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- (5) 인터록 우회가 현장 스위치에 의하여 진행된 경우에는 해당 스위치에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.
- (6) 인터록 우회기간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, 1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- (가) 우회를 하더라도 공정 및 안전에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
 - (나) 동일한 목적의 다른 로직이 존재하는 경우
 - (다) 장치 및 설비의 교체와 보수작업의 경우
- (7) 위의 "(6)항"의 경우를 제외하고, 우회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추가 안전조치 등의 방안을 기록하여 사업장 안전관리 총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(8) 인터록 우회 및 해지 사항은 교대근무 시에 발생한 경우 반드시 기록으로 다음 교대조에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.

5.3 작업관련자의 책임 및 의무

작업관련자는 <표 2>와 같은 책임 또는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P - 133 - 2013

<표 2> 인터록 우회 및 해지에 대한 책임과 권한

작업 관련자	책임 또는 권한
작업승인자	 작업 항목 결정 및 승인 작업입회자 결정 및 승인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 승인 작업완료 최종 승인
작업입회자	 작업 전 안전조치 사항 확인 작업개시 지시 및 불안전 요소 발견 시 작업중지 명령 작업결과 현장 확인 작업 후 안전조치 사항 및 작업 완료 확인
작업자	 작업허가서에 따른 안전사항 준수 작업내용 숙지 및 절차 준수 작업결과 확인 및 결과 보고

5.4 기록 관리

- (1) 인터록 우회 관리를 위하여 인터록 우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하여 한다.
 - (가) 인터록 우회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정상화하는 단위공장 교대조 책임자는 인 터록 우회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.
 - (나) 일련번호와 인터록 항목명을 기록하여야 한다.
 - (다) 사유, 우회 시 예상되는 영향(문제점), 대책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.
 - (라) 우회 실시 날짜를 기록하여야 한다.
 - (마) 우회 실시 기록자와 책임자(단위공장 운전책임자)의 서명을 기록하여야 한다.
 - (바) 우회 해지 시 해지일자 및 기록자와 책임자(단위공장 운전책임자)의 서명과 서명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.
- (2) 기록된 인터록 우회관리대장은 공장 조정실에 비치하여 교대조를 비롯한 모든 근무자가 알 수 있도록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.

P - 133 - 2013

6. 인터록 보안

- (1) 인터록 설정값이 현장 스위치 교체형식이 아닌 프로그램 및 계측기 입력값에 의한 작동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분산제어시스템(DCS) 등의 판넬에서 변경이 가능하므로, 다음과 같은 보안절차를 유지하여야 한다.
 - (가) 열쇠(Key)를 사용하여 변경모드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작업부서 책임자와 현장 단위공장 운전책임자가 열쇠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(나) 암호형식으로 변경모드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작업부서 책임자와 현장 단위공장 운전책임자만 인지할 수 있도록 암호를 관리하여야 한다.
- (2) 인터록 우회작업이 릴레이 판넬에서 점퍼작업 형태로 이루지는 경우에는 릴레이 판넬의 잠금장치를 작업부서 책임자 및 단위공장 교대조 책임자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.